

# 노인가구의 형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이가옥\*\* 권중돈\*\*\*

##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 II. 이론적 배경

1. 가족 및 가구의 개념
2. 가족(가구)형태의 분류방법

##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2. 조사도구
3. 표본추출 및 자료수집절차

## 4. 자료분석방법

5. 연구의 제한점
6. 주요개념의 정의

## IV. 연구결과

1. 노인가구형태의 분류방법
2. 노인가구의 지역별분포
3. 노인가구의 구조

## V.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적 제언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란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해결방안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이 시도될 수 있겠다. 그 중 하나로서 노인문제를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변화의 측면에서 보는 관점이 보편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면, 세대구성면에서는 핵가족화 현상이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독신 또는 부부가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 규모면에서는 출산아수의 감소에 따른 소가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요인으로는 산업화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산업화 과정은 도시지역에서의

\* 본 연구는 1989년 완료된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노인가구의 구조적 형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의 내용중 일부를 요약했음.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수석연구원.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연구원.

고용취업자를 증가시키게 되어 농업을 주로 하던 사회에서와는 달리 노부모와의 동거 필요성을 감소시키게 되어 젊은 가족원은 노동력의 수요가 있는 도시에 집중하는 한편 노부모는 농촌지역에 잔류한다고 하는 세대간의 지역적 가족분리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고용취업자의 증대와 젊은 가족원의 도시집중은 가업, 가산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전통적 가족제도의 생활기반을 약화시켰으며 더 나아가서는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가족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인은 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겠다.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개인의 생활의식은 물질적 요구로부터 생활의 여유를 즐기기 위한 문화적 욕구 또는 정신적 욕구로 그 중심을 옮겨 가게 되었다.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는 '가(家)'라는 대규모 생활공동체내에서의 역할보다는 자신의 가족생활 그 자체를 중시하게 되어 생활양식면에 있어서는 부부관계가 중심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으로 되었다. 이에 따라 부부관계와 자녀관계는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어 가는데 반하여 노부모와의 관계는 소원해지게 되어 노부모는 가정내에서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의식변화는 사회참가율을 증가시켜 가정내에서의 노인부양을 위한 인재부재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노인문제는 결국 이제까지 부양을 담당하여 왔던 가족의 부양기능이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데 반하여, 이에 대비한 노인 자신의 노후준비 및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흡에서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안은 특히 노인이 속해 있는 노인가구의 구조변화와 직결되어 분석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변화, 특히 노인문제와 관련된 노인가구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가 아직껏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즉, 첫째는 노인가구의 구조적 변화를 취급한 자료가 극히 미흡하며, 둘째는 연구자료가 전국적으로 대표치가 없는 소규모 혹은 일부지역에서의 한정된 조사결과이며, 셋째는 연구결과가 단편적이고 연속성이 없는 관계로 노인가구형태의 변화에 대한 시계열적인 연구자료로는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이 올바르게 수행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노인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가족변화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형태 및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또한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결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실시되는 본 연구는 점차 그 중요성이 더해 가는 노인문제 해결에 있어서 실제적인 첫단계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를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부양기능의 쇠퇴에 기인한다는 시각에서 인식하고, 노인가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여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기본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노인가구형태의 분류방법 모색
- 2) 노인가구의 지역별 분포 파악
- 3) 노인가구의 가구구조 파악

연구의 목적을 이와 같이 설정한 것은 노인문제를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직결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나라 노인가구형태의 분류모형이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이러한 분석틀을 기준으로 가족의 변화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족 및 가구의 개념

가족이라는 복합적이고 가변적 속성을 지닌 실질적 현상 또는 외적 실체(external reality)에 대한 과학적 관찰과 방법론적 추론을 거쳐 언어구조(structure of language)로 표현하는 개념화 과정<sup>1)</sup>에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가족의 실질적 속성의 특성부분에만 초점을 둘 수도 있으며, 어떤 속성이 누락되거나 조작화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즉, 가족이란 복합체를 어떠한 개념체계 또는 준거틀(conceptual framework)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 기존의 가족연구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정의에서도 이러한 개념화 과정상의 차이로 인하여 가족에 대한 정의가 매우 상이하고, 초점을 두는 영역이 서로 다르다.

Murdock<sup>2)</sup>의 경우 가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동거동재(同居同財)'의 요소를 강조한 반면 Levi-Strauss는 가족성원의 '유대, 관계, 결합'을 중요한 요소

1) Parsons, T.,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Vol. 1.(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p. 27-41 참조.

2) Murdock, G. P., Soci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p. 1.

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정의를 근거로 해 볼 때, 가족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족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소규모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나 실험연구에서는 가족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대규모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분석할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다. 즉, ‘동거동재’를 기준으로 가족의 범위를 결정할 경우, ‘동재’, 즉 가게의 공동운영을 어디까지로 한계를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야기되며, ‘유대, 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규범가족과 실질가족<sup>4)</sup>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므로 대규모의 가족연구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의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그 범위결정에 많은 제한점을 갖는 ‘가족’의 개념 대신 ‘가구’의 개념을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가구의 개념은 주로 정책이나 행정분야에서 사용되며, 주거하는 공간과 가계란 경제적 협력만을 기준으로 한 집단이나 가족에 비해 혈연관계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의 중요성이 약화되기는 하나 대규모 집단에 대한 복지정책 및 행정 기초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어서는 유용한 개념이다.

## 2 가족(가구)형태의 분류방법

### 1) 가구원의 범위 및 분류기준

일반적으로 가족 또는 가구의 형태를 분류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은 ‘가구원의 범위’와 ‘분류의 기준이 될 가구원’이다. 먼저 가구원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1)전체 가구원을 포함시키는 경우와 (2)비혈연 가구원을 제외한 친족가구원만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가구단위 조사에서는 전체가구원을 포함시키는 경향이 높은 반면 가족연구에 있어서는 친족 또는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가족성원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높다.

다음으로 가구형태 분류의 기준을 어떠한 가구원에 두느냐 하는 점에서는 (1)가구주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과(2)가구내 최약령층의 부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sup>5)</sup>이 있다. 물론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거나 가구내의 최약령층의 부부를 기준으로 하여도 가구형태를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3) 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일지사, 1986), pp. 27-29.

4) 經濟企劃廳 國民生活局, 長壽社會のうつつ (昭和 62), pp. 120-132.

5) 山本千鶴子, “家族類型別世帯數の比較”, 人口問題研究 (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 昭和 24), pp. 49.

## 2) 가구의 구조적 분석방법

가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1)가구원의 인원수에 따라 분석하는 수량적 분석방법과 (2)가구원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구성분석방법(Compositional Analysis)이 있다. 가구원사이의 관계 또는 결합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구성분석방법에는 (1)세대개념(世代概念)에 근거하는 방법과 (2)가구내 친족성원들의 혈연관계에 기초한 결합범위(結合範圍)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수량적 분석방법은 가구원의 가구내 지위와 관계 등과는 상관없이 단지 가구의 크기(size) 즉, 가구규모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분석방법으로 평균 가구원수와 인원수별 가구의 분포를 집계하여 가구규모의 증감 또는 변화추이를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가족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구내의 가족 또는 친족성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규모의 대소에 따라 대가족과 소가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대·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규범적이라기 보다는 상황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에 불과하다.

구성분석방법에 있어서 먼저 세대개념에 근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세대란 결혼과 출산에 의해 형성되는 부모 - 자녀관계라는 단순관계에서 출발하여 친족관계로 확대되는 혈연관계상의 계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의 수평적 구조보다는 수직적 구조와 더 깊은 관련성을 지닌 개념이다. 가족의 세대구성에 따라 가족문화, 가족성원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가 상이한 특성을 보일수 있지만, 가족형태의 분류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대개념의 질적 측면보다는 양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가구의 형태를 가구원의 친족관계상의 결합범위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에는 비혈연가구원은 제외되므로 가족형태의 분류와 거의 일치하게 된다. 가족유형분류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존의 가족유형분류에 관한 이론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가족의 형태를 가족관계, 제도, 구조적 측면에서 유형화한 연구자들은 가족원의 규모와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sup>6)</sup> 이광규<sup>7)</sup>는 가족성원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부부가족, 직계가족, 확대가족의 3가지 형태로 우리나라 가족의 유형을 분류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징적 가족형태를 직계가족 특히 확산성 직계가족이라 하였으며, 최재석<sup>8)</sup>은 혈연관계가 있는 가족 또는 친족성원

6)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1987), p. 53, 154.

이광규, op. cit., pp. 34-35.

김두현,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pp. 317-325.

7) 이광규, op. cit., pp. 46-47, 275.

8) 최재석, op. cit., pp. 129-152.

의 결합범위에 따라 직계가족, 부부가족, 방계가족, 과도적 가족의 4가지 기본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 유형에 결혼관계를 첨가하여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한국가족의 전형적 유형에 대한 양적분류에서 나타나는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대와 직계친의 배우관계'에 입각하여 21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가계계승과 방계친의 유무'에 따라 각 유형을 3개의 세부형태로 분류하여 총 63개의 가족형태로 한국가족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윤종주<sup>9)</sup>는 세대, 고전적 가족형태의 개념, 가족의 주기적 변화의 3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1) 1세대 젊은 핵가족 (2) 2세대 젊은 핵가족 (3) 2세대 팽창된 젊은 핵가족 (4) 2세대 복합가족 (5) 3세대 직계가족 (6) 3세대 복합가족 (7) 2세대 늙은 핵가족 (8) 1세대 늙은 핵가족 (9) 형태상 가족형성 이전 이거나 가족형태가 붕괴된 기타의 9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sup>10)</sup>에서는 세대와 가구주를 중심으로 한 가구원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14개의 가구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의 분류방법은 대체로 고전적 가족유형의 개념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족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족형태에 대한 분류모형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노인가족 또는 노인가족 형태의 분류를 시도하는 연구자들은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된다. 노인가족은 가족생활주기상의 마지막 단계에 속하며, 다세대가족(Multigenerational Family)으로서 그 구조상에 있어 독특한 특성<sup>11)</sup>을 지님에도 전체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형분류의 한 부분으로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인협과 최성재<sup>12)</sup>는 "기존의 가족 유형분류에서 부부가족과 직계가족의 분류는 노인가족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분류는 못된다"고 지적하면서, 세대와 가족성원의 관계에 기준을 두고 노인가족의 유형을 (1) 독신노인(2) 1세대 노인핵가족(3) 2세대 노인핵가족 (4) 2세대 복합가족 (5) 3세대 복합가족 (6) 3세대 직계가족의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분류 역시 포괄적이며, 전형적이고 일반적 가족구성을 지닌 노인가족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분류가 가능하나 전체 노인가족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제한점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전체 가족과 노인가족의 유형분류에 관한 이론은

9) 윤종주, "가족형태별 인구구조와 이의 생태학적 과정에 관한 소고", 인구문제논집, Vol. 19(인구문제연구소, 1975), pp. 18-19.

10)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Vol. 1(1985), p. 362.

11) Nock, S. L., Sociology of the Family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87), p. 247.

12)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pp. 185-189.

각기 상이한 분류기준에 입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족에 관한 전형적인 분류방법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상의 가족유형 분류방법은 특정한 분류기준에 입각하고 있는 관계로 나름대로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1988년 한국인구보건 연구원에서 조사완료한 대규모 전국 7만 표본가구의 「전국인구보건 실태조사」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의 접근방법 및 분석내용의 보완을 위한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 1. 조사대상

「전국인구보건실태조사」는 가구단위의 조사이며, 조사가구에서 조사 당시 통상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 친지, 동거인, 고용인 등을 포함한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국인구보건실태조사」의 조사대상가구는 부부가구 또는 혈연가구를 포함한 2인 이상의 보통가구, 1인으로 구성된 독인가구, 5인 이하의 비혈연가구가 포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노인 1인 또는 그 이상이 존재하는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 2. 조사도구

「전국인구보건실태조사」에서는 구조화된 4종의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가구원 조사표만을 활용하였는데, 주요조사내용은 가구원의 구성, 세대구성, 가구원수 등이 포함된다.

#### 3. 표본추출 및 자료수집절차

##### 1) 표본 추출

「전국인구보건실태조사」의 표본조사구는 1988년도 다목적 기본표본조사구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는데, 이 다목적 기본표본조사구는 1985년 인구센서스 지역단위 조사구중에서 섬지역의 조사구를 제외하고 추출한 것이므로, 섬지역과 1985년 인구센서스 이후의 신축아파트에 대하여는 각각 별도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여 추가하였다.

### (1) 다목적 기본표본조사구의 추출내역

1985년 인구센서스 조사구중에서 시설단위의 조사구와 섬지역의 조사구를 제외한 나머지의 약 146,900개의 보통조사구를 다목적 기본표본조사구의 추출대상 조사구로 하였다. 각 행정구역의 동·읍·면별로 추출대상 조사구를 통합하여 기초단위조사구를 설정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조사구별로 인구센서스 당시의 가구수를 10으로 나누어 반올림한 크기의 측도(測度)를 부여한 후, 크기의 측도가 10이상이 되도록 조사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초단위조사구로 하였다. 이 기초단위조사구를 산업특성에 따라 1차분류한 후, 다시 주된 주택특성에 의하여 아파트조사구, 일반주택조사구, 연립주택조사구, 기타조사구로 2차분류 하였으며, 아파트조사구에 한해 중앙난방조사구와 기타난방조사구로 다시 분류하였다.

2개의 기초단위조사구로 구성된 추출단위 조사구의 명부를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각각 시도단위 행정구역번호 순서로 정리하고, 시부와 군부에서 각각 350개씩의 추출단위 조사구를 계통추출하여 다목적 기본표본조사구로 하였다.

### (2) 실사표본조사구의 추출 및 가구수의 조정

이 다목적 기본표본조사구 중에서 시부의 204개 기본표본조사구와 군부의 92개 기본표본조사구를 계통추출하여 실사표본조사구로 하였으며,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전국의 섬지역에서는 섬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교통을 고려하여 3개의 추출단위조사구를 실사표본조사구로 유의추출하였다. 1985년 인구센서스 이후 1988년 4월 말까지의 신축아파트에서는 크기의 측도에 비례하는 확률로 시부 5개, 군부 1개 아파트를 계통추출하였다.

「전국인구보건실태조사」의 실사표본조사구는 모두 305개가 추출되었으며, 305개 실사표본조사구에서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총가구수는 73,570가구가 되었으며, 시부 48,157가구, 군부 20,968가구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노인가구의 적격가구(適格家口)는 「전국인구보건실태조사」의 조사완료 가구중에서 15,632 가구였으며, 노인인구는 19,560명이었다. 시부·군부별 내역을 보면, 시부의 경우 8,162가구의 9,878명의 노인과 군부의 7,470가구의 9,682명의 노인에 대하여 조사 완료하였다.

그러나 각 실사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이 총별 크기의 측도 및 조사구별 크기의 측도에 따라 다르고 「전국인구보건실태조사」의 가구조사 완료율이 실사표본조사구마다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조사구별 승수를 적용하여 가중(加重)표본실수치를 산출하였다.

### 2) 자료수집절차



「전국인구보건실태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의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조사팀은 각각 조사지도원 1명과 조사원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는 각 조사팀이 정해진 조사일정표에 따라 한 조사구의 가구를 모두 조사하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제 1차 조사에서는 122명의 조사원이 1988. 8. 1-9. 17(48일간), 제 2차 조사에서는 78명의 조사원이 1988. 10. 20-12. 4(46일간)에 걸쳐,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직접적인 면접방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 4. 자료분석방법

「전국인구보건실태조사」의 가구원조사표를 점검하여 노인가구(만 60세이상의 노인이 존재하는 가구)만을 선별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변인을 중심으로 부호화작업을 하였다. 부호화된 자료는 전산처리를 위해 자료수정작업을 거쳐 테이프에 저장하였으며, 가구와 인구단위의 2개의 화일(file)을 구성하였다. 입력된 자료는 SPSS를 사용하여 통계분석하였는데, 자료분석에 사용된 SPSS의 하위 프로그램은 Frequency, t-test, Chi-Square검증, 변량분석등이다.

####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목적에 합당한 독자적인 표본추출 및 실태조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사망률 추정을 제 1의 목적으로 실시된 「전국인구보건실태조사」의 일부 조사자료를 분석하였으므로 연구의 분석범위를 제한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노인가구의 가족구성과 구조적 변화추이에 관한 일관된 이론적, 실제적인 기존연구가 미흡하여 노인가구의 구조적 특성을 체계적인 모형하에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기존자료를 활용한 관계로 '직계형 노인가구'의 분석에 있어서는 장남으로 이어지는 직계형 가구인지 차남 이하의 아들로 이어지는 직계형 가구인지는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넷째, 노인가구의 구성을 (1)결합범위, (2)세대, (3)가구규모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가족주기 변화의 개념은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같은 2세대의 가족구성도 이것이 축소기 가족인지 팽창기 가족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 6. 주요개념의 정의

- 1) 노인가구 :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조사 당시 조사구역에 생활의 본거의사(本據意思)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가구
- 2) 독신노인가구 :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가구
- 3) 핵가족형 노인가구 : 만 60세 이상의 노인 부부 또는 노인부부(독신)과 미혼 자녀가 동거하고 있는 가구
- 4) 직계형 노인가구 : 만 60세 이상의 노인과 기혼의 아들 및 그 자녀로 구성된 가구
- 5) 기타친족 노인가구 : 만 60세 이상의 노인과 딸부부가 동거하거나 2쌍(2명) 이상의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및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동거하는 가구
- 6) 비혈연가구 :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하여 혈연관계가 없는 5인 이하가 함께 모여 가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가구 및 노인이 주인가구의 비혈연 고용인 등으로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구

## 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의 노인가구 형태의 분류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노인가구의 지역별 분포 및 노인가구의 구조적 특성을 가구형태, 세대구성, 가구규모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 1. 노인가구형태의 분류방법

#### 1) 가구원의 범위 및 분류기준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비혈연 가구원의 수가 적긴 하나 노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극히 미미한 현 실태하에서는 비혈연 가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노인가구의 비율을 파악해 보는 것도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전체 가구원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노인가구의 형태를 가구주나 최약령층의 부부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2인 이상의 보통가구에서 노인가구를 선별하는 과정(Screening Procedure)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이 가구주가 아닌 가구<sup>13)</sup>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노인가구의 상당부분을 포괄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에 관심의

13)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는 53%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는 60세 이하의 가구원이 가구주인 가구였다.

초점을 두고 노인들이 어떠한 가구형태하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가구내의 최고령자를 기준으로 하여 가구구성을 파악하였다. 이때 동일가구내에 노인이 2명 이상이면서 최고령자가 중심가구<sup>14)</sup>의 성원과 직계존비속의 관계가 아니라 방계친 또는 기타친척일 경우에는 중심가구내의 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형태를 분류하였다.

## 2) 가구의 구조적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세대별 접근방법은 상주개념(常住概念)에 입각한 가구단위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가구내 가족의 가족력(Family History)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조사과정 당시의 현실적 세대구성에 국한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된 비혈연의 가구원에게는 세대개념을 적용할 수 없었으나, 비혈연이 포함된 가구의 비율이 미미한 수준<sup>15)</sup>이었으므로 세대수의 산정에서 비혈연 가구원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독신가구, 독신노인+비혈연, 고용인 노인+중심가구원은 '기타세대'로 구분하였으며, '형제끼리 동거하는 가구'와 '부부+비혈연'가구는 1세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친족관계상의 결합범위에 따라 노인가구의 형태를 분류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은 변인은 (1)가구원의 친족관계 (2)결혼상태 (3)세대의 3가지 변인이다. 이러한 3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1차로 가구원의 친족관계와 결혼상태를 중심으로 하여 61개 형태로 노인가구의 형태를 소분류하였다. 이러한 소분류에 세대의 개념과 '동거하는 기혼자녀부부 또는 기혼독신자녀의 수'에 따라 16개 형태로 노인가구를 중분류하여 최종적 노인가구의 형태를 대분류 5개, 중분류 16개, 소분류 61개로 분류하였다.<sup>16)</sup>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분류된 노인가구의 형태는 <표1>과 같다.

<표1>에 제시된 노인가구의 형태와 기존의 가족유형에 관한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면 몇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14) 중심가구란 생활의 중심이 되는 가구로 대개 2인 이상의 혈연관계가 있는 근친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인 이상의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가족원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며, 기타 친척이나 비혈연은 중심가구원에서 제외된다.

15) 비혈연 가구원이 동거하는 가구는 총 62가구로 전체가구의 0.4%에 불과하며, 중심가구와 고용인의 관계에 있는 노인이 동거하는 가구가 31가구, '독신노인+비혈연'의 12가구를 제외하면 실제로 세대수 산정과정에서 제외되는 비혈연포함가구는 19가구로 전체가구의 0.1%이다.

16) 이가옥 외, 노인가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pp. 150-154 참조.

〈표 1〉 노인가구의 형태

가구형태	가구원의 구성
<b>I. 독신노인가구</b>	
독신가구	독신노인
<b>II. 핵가족형 노인가구</b>	
부부가구	부부노인+(비혈연)
부부+자녀가구	부부노인+미혼자녀+(비혈연)
편부가구	독신남자노인+미혼자녀
편모가구	독신여자노인+미혼자녀
<b>III. 직계형노인가구</b>	
2대직계가구	노인+기혼아들+(미혼자녀)
3대직계가구	노인+기혼아들+친손자녀+(미혼자녀)+(비혈연)
4대이상직계가구	노인+기혼아들+친손자녀+친중손자녀+(미혼자녀)
중간세대결여가구	노인+(아들)+(친손자녀)+(친중손자녀)+(미혼자녀)
<b>IV. 기타친족노인가구</b>	
아들+외손가구	노인+기혼아들+외손
딸동거가구	노인+기혼딸+(미혼자녀)+(외손자녀)
기혼2쌍동거가구	노인+기혼2쌍+(미혼자녀)+(친(외)손자녀)
중간세대결여가구	노인+(기혼아들)+(기혼딸)+(친(외)손자녀) +(친(외)중손자녀)+(미혼자녀)
기타친척동거가구	노인+기타친척+(기혼아들/딸)+(미혼자녀)+(손자녀)
형제동거가구	노인+형제+(기혼아들/딸)+(미혼자녀)+(손자녀)
<b>V. 비혈연노인가구</b>	
비혈연가구	독신노인+비혈연 고용인 노인+중심가구원

첫째, '독신노인가구' 및 '비혈연 노인가구'와 관련하여서, 최재석<sup>17)</sup>은 (a)가구주만의 1인 가구, (b)가구주와 비가족원 1인으로 구성된 가구, (c)가구주와 비가족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독신노인가

17) 최재석, *op. cit.*, 1987, pp. 41-48.

구'와 최재석의 (a)형은 개념이 일치하며, 비혈연가구중 '독신노인+비혈연가구'는 최재석의 (b)형과 (c)형을 포함하는 가구형태이다. 본 연구에서의 독특한 가구형태는 '고용인 노인+중심가구원'의 가구형태인데, 노인이 타가족에 고용되어 있는 형태의 가구로서 가구주의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면 직계형 또는 핵가족형 노인가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구형태이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관심을 두고 분석하였으므로 비혈연가구의 '고용인 노인+중심가구원'의 형태로 분류하였다.

둘째, '핵가족형 노인가구'와 관련하여서, 최재석<sup>18)</sup>과 이광규<sup>19)</sup>는 '부부가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강희경<sup>20)</sup>등은 '핵가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부중의 1명이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노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부 및 편모가구를 포괄할 수 있는 '핵가족형 노인가구'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인구 및 주택센서스<sup>21)</sup>의 가구형태분류와 일치한다.

셋째, '직계형 노인가구'와 관련하여서 전통적 가족유형분류에 있어서는 확대가족의 한 유형으로서 '가장의 직계비속중 장남, 장손의 가계계승자와 이들의 배우자 및 무배우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장남, 장손으로 연결되는 부계혈연을 강조하게 된 것은 17세기의 가족제도 특히 가족상속제도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부계중심의 혈연조직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강화된 가족유형이 직계가족의 유형이며, 한국의 전형적인 가족유형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장남이나 장손이 직장 또는 교육관계로 분가하여 하나의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차남이하의 아들이 부모와 동거하면서 가계를 계승하고 가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다.<sup>22)</sup>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자료상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혼아들부부' 또는 '기혼독신아들(며느리)'<sup>23)</sup>과 '친손자녀'가 동거하는 가구를 직계형 노인가구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18) Ibid. pp. 130-131.

19) 이광규, *op cit.*, pp. 45-46.

20) 강희경 외, 한국의 가족형태와 가족주기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pp. 10-13.

21) 최재석은 농촌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형태에서 차남 이하의 아들이 부모와 동거하면서 가산을 상속받는 가구를 '차남형 직계가구'라 하여, 전통적 직계가족의 한 변형으로 간주하고 있다(최재석, "이혼과 사회", 일방 고영복교수 회갑기념 논총, Vol. 2(서울: 전예원, 1988), pp. 242-248 참조).

22) '독신며느리'를 '독신아들'과 동일하게 간주한 것은 부계가족인 우리나라에서 며느리는 시가(媳家)의 일원으로 완전히 흡수되고 친정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전통적인 규범에 근거를 두고 이다(이효재,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1986), p. 103 참조).

‘2대 직계가구’와 관련하여 윤종주<sup>24)</sup>는 ‘2세대 팽창된 핵가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런 가구형태는 자녀부부의 재생산과정을 거쳐 ‘3대 직계가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세대 핵가족보다는 직계가족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직계형가구로 분류하였다.

넷째, ‘기타친족가구’의 유형분류는 학자에 따라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기타친족 노인가구에 해당하는 기존의 가족유형 분류로는 ‘가구주+(유배우 방계친)+(유배우 직계비속)+기혼딸(사위)’로 구성된 ‘쌍변적 방계가족(雙邊的 傍系家族)’<sup>25)</sup>과 동일 세대내에 기혼부부 2쌍 이상이 동거<sup>26)</sup>하는 복합가족<sup>27)</sup> 그리고 ‘중심가족에 기타친척이 동거’하는 ‘기타친척가구’가 포함된다. 이와같이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포함함에도 각 소분류의 형태별 빈도가 매우 낮았으므로 분석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대분류로 통합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본 연구에서는 가족 또는 가구형태 분류에 관한 기존 학자의 이론과 분류기준을 검토하고,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노인가구형태의 체계적 분류를 시도하였다. 노인가구의 형태를 분류함에 있어서 분류하는 학자의 이론적 지향과 분류기준에 따라 상이성과 제한점이 게재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족유형분류에 관한 이론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들이 갖는 제한점을 보완하여 노인가구의 형태를 분류하였으므로 노인가구의 형태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연구가 전무한 현실정에서 노인가구형태에 관한 이해의 증진과 노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충분한 의의를 지닐 것으로 본다.

## 2 노인가구의 지역별 분포

「전국인구보건실태조사」의 조사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의 6개 대도시가 141개 조사구, 기타 중소도시가 68개 조사구, 군부가 96개 조사구로 노인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체 노인가구 15,632가구중에서 대도시에 34.1%, 중소도시에 18.1%, 군부에 47.8%가 분포되어 있어, 조사대상 노인가구의 절반 정도가 군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완료가구중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비율은 22.6%였다. 지역별로 전체가구에서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보면, 군

24) 윤종주, *op. cit.*, pp. 18-21.

25)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서울:일지사, 1986), pp. 252-253.

26) 이러한 형태의 가족을 ‘방계가족’이라 부르는 학자도 있다(윤종주, *op. cit.*, pp. 18-21. 최재석, *op. cit.*, (1987), pp. 129-134 참조).

부의 경우 노인가구가 36.6%로 군부의 가구중 1/3이상이 60세 이상의 노인이 최소한 1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중소도시 17.7%, 대도시 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노인가구의 구조

#### 1) 가구형태

친족관계의 결합형태에 따라서는 '독신노인가구, 핵가족형 노인가구, 직계형 노인가구, 기타친족 노인가구, 비혈연 노인가구'의 5개 가구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의 구성비율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계형 노인가구가 전체 노인가구의 절반을 상회하는 5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핵가족형 노인가구가 31.7%, 독신노인가구가 9.6%, 기타친족 노인가구가 5.2%의 순이었으며, 비혈연 노인가구는 0.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합범위에 따른 가구형태를 좀 더 세분화하여 16개 중분류에 따라 구성비율을 살펴 보면, 전체 노인가구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형태는 3대 직계가구로 41.3%이며, 부부만으로 구성된 부부가구가 13.3%, 부부+미혼자녀가구가 13.1%로 이 3개 가구형태가 전체 노인가구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노인가구의 구성비율을 살펴 보아도 여전히 직계형 노인가구와 핵가족형 노인가구의 구성비율이 높지만, 대도시에서는 기타친족 노인가구의 비율이 독신노인가구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같이 대도시에서 기타친족 노인가구의 비율이 독신노인가구에 비해 구성비율이 높은 것은 딸동거가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중분류에 따른 가구형태별 구성비율을 보면 대도시의 경우 딸동거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소도시는 중간세대결여 직계형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군부의 경우는 타지역에 비해 부부가구와 독신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2대 직계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상의 결합범위별 노인가구 형태에 관한 조사결과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형태와 비교해 보면 노인가구의 특징적인 요소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는 핵가족형 가구가 68.8%, 직계형 가구가 10.2%, 단독가구(독신가구)가 6.9%, 기타가구가 14.1%로 나타나 본 연구의 노인가구 형태별 구성비율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27)</sup> 이

27) 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의 '세대구성 및 가구원수'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재분류한 결과이다. (경제기획원, *op. cit.*, p. 362 참조).

〈표 2〉 지역별 가구형태

가구형태	전 국	대도시	중소도시	군 부
독신노인가구	(9.6)	(6.9)	(7.8)	(12.1)
핵가족형 노인가구	(31.7)	(29.8)	(28.5)	(34.3)
부부가구	13.3	7.7	9.2	18.8
부부+자녀가구	13.2	14.9	13.5	11.7
편부가구	0.7	0.9	0.6	0.6
편모가구	4.6	6.3	5.2	3.2
직계형 노인가구	(53.3)	(55.0)	(57.7)	(50.2)
2대 직계가구	5.2	3.3	3.7	7.1
3대 직계가구	41.3	45.7	45.6	36.4
4대 이상 직계가구	1.5	1.1	1.9	1.7
중간세대 결여가구	5.3	4.9	6.5	5.0
기타친족 노인가구	(5.2)	(7.7)	(5.9)	(3.2)
아들+외손가구	0.1	0.1	*	*
딸동거가구	3.6	5.7	4.3	1.9
기혼자녀 2쌍동거가구	0.4	0.6	0.4	0.3
중간세대결여가구	0.3	0.4	0.3	0.2
기타친척동거가구	0.7	0.8	0.7	0.6
형제동거가구	0.1	0.1	0.2	0.2
비혈연 노인가구	(0.3)	(0.5)	(0.2)	(0.1)
계	100.0	100.0	100.0	100.0
(가구)	(15,632)	(5,334)	(2,828)	(7,470)

\* 빈도가 3가구 이하임.

주 : ( )의 비율은 대분류의 구성비율임. 단, 독신노인가구와 비혈연노인가구의 구성비율은 대분류와 중분류의 구성비율이 동일함.

결과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중에서는 핵가족형 가구가 가장 많은 반면 노인가구중에서는 직계형 노인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때 노인의 경우에는 경제 및 건강상의 이유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의존성이 증가함으로써 자녀 또는 가족성원과 동거하는 다세대가구(多世代家口)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젊은층의 가구원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1-2세대의 소가족, 핵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인가구의 다세대적 특성과

1. 핵가족형가구 : 부부+(부부+자녀)+(편부모+자녀)
2. 직계형가구 : (부부+양친)+(부부+편친)+(자녀+부부+양친)+(자녀+부부+편친)+4세대 이상
3. 독신가구 : 단독가구
4. 기타가구 : 1세대의 기타+(부부+자녀+부부의 형제 또는 자매)+2세대의 기타+3세대의 기타+비혈연가구



함께 증가하고 있는 가구형태의 하나가 독신노인가구인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독신가구의 비율이 6.9%인데 비해 노인가구에서 2.7%정도 높은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독신노인가구가 노년기의 독특한 가구형태가 아니라 보편적 가구형태중의 하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1985년 한국인구보건연구원<sup>28)</sup>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독신노인가구는 1985년 8.8%에서 4% 포인트 정도, 기타친족 및 비혈연 노인가구는 1.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도 딸동거가구는 2.8%에서 0.8%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핵가족형 노인가구와 직계형 노인가구는 1985년에 비해 각각 2% 포인트, 3% 포인트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핵가족형 노인가구에서 부부노인만으로 구성된 부부가구는 1985년에 비해 1.6% 포인트 정도 증가한 반면 '부부(독신)노인 + 미혼자녀'의 가구형태는 5% 포인트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노인가구형태별 구성비율의 변화정도를 근거로 해볼 때 독신노인가구와 부부가구의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핵가족형 노인가구나 직계형 노인가구의 비율은 인구학적 변화와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나 딸이 노부모를 모시는 딸동거가구, 즉 쌍변적 가구형태의 구성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세대구성

본 연구에서 노인가구의 세대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 접근방법이 횡단적 접근방법(cross-sectional approach)으로 노년가족의 전체 가족력을 포괄하지 못하며 현실적 세대구성에 국한된 결과이며, 세대의 개념을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비혈연포함가구의 비율과 절대수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비혈연포함가구의 경우 분석과정에서는 중심가구의 세대수에 근거하여 분류하였음에 밝혀둔다. 이상과 같은 개념규정을 전제로 하여 노인가구의 세대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가구의 세대별 구성비율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세대가 49.7%로 전체 노인가구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세대 24.7%, 1세대 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가구의 세대별 구성비율을 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sup>29)</sup>에서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세대별 구성비율이 2세대

28) 임종권 외,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pp. 25 참조.

29) 경제기획원, op. cit., (1985), pp. 392-393.

67%, 3세대 14.4%, 1세대 9.6%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보면, 노인가구의 경우 다세대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가구가 다세대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는 요인으로는 노인의 건강상태, 노인과 자녀의 경제적 사정 및 가치관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노년기에 이르러 신체기능의 약화, 경제적 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해 의존성이 증가하는데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3〉 지역별 세대구성

세 대	전 국	대도시	중소도시	군 부
1세대	13.4	7.8	9.3	18.9
2세대	24.7	26.5	24.2	23.5
3세대	49.7	56.5	55.5	42.7
4세대 이상	2.4	1.8	3.0	2.6
기타*	9.8	7.4	7.9	12.3
계	100.0	100.0	100.0	100.0
(가구)	(15,632)	(5,334)	(2,828)	(7,470)

\* 독신노인가구, 비혈연가구가 포함됨.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3세대, 2세대, 1세대 가구의 순으로 높은 구성비율을 보이는 것에는 차이가 없으나, 대도시에서 타지역에 비해 3세대 가구와 2세대 가구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군부에서는 3세대와 2세대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고 1세대와 기타세대는 군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대도시의 경우 3대 직계가구를 형성하는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군부에서는 독신가구와 부부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결합범위별 가구형태의 결과와 어느정도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세대별 가구형태와 결합범위별 가구형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핵가족형 노인가구는 2세대 가구가 58.2%로 1세대 가구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자녀의 결혼후 분가나 미혼자녀의 출가로 인해 가구규모가 축소된 1세대 부부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노인+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형 노인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직계형 노인가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형적 가족형태가 확산성 직계가족이란 점과 노인가구의 다세대적 특성이 반영되어 '노인+아들부부(독신)+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전형으로 하는 3세대 직계형 가구가 86%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노인+아들부부(독신)'

로 구성된 2세대 직계형 가구는 9.8%, 그리고 4대 이상의 직계형 가구는 4.2%로 나타나는데, 5세대 가구는 '중간세대결여 직계형 가구'로서 2가구에 불과하였다.

기타친족 노인가구에서도 역시 3세대 가구의 비율이 타세대 가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3세대 딸동거가구가 5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세대 가구형태가 20%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독신/비혈연가구는 혈연 및 친족관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기타세대로 분류하였는데, 독신노인가구가 기타세대의 97.2%를 차지하고 있다.

### 3) 가구규모

가족 또는 가구는 생활공동체 집단으로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생존과 사회적 존속을 위한 요구, 즉 성생활, 자녀출산 및 양육, 경제적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자기조절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만약 가구규모가 적정수준을 넘어서서 경제적 부양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가(分家), 출산자녀수의 제한<sup>30)</sup> 등을 통해 가구규모를 적정화함으로써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여 자활(自活)의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특히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사회변화의 영향 뿐만 아니라 가족발달단계상 마지막 단계에 속해 있음으로써 자녀의 결혼후 분가나 출가 등으로 가구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와 인구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먼저 가구내 노인의 구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노인가구의 평균가구원수와 가구규모별 분포를 지역, 가구형태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노인가구의 가구당 노인수를 보면,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1명 존재하는 가구가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명인 경우가 약 1/4에 이르고 있는 반면 3명 이상의 노인이 한 가구내에서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1%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1명의 노인이 존재하는 가구가 71% 이상을 상회하는 공통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하나, 노인 1명이 존재하는 가구는 대도시가 81% 정도로 가장 높고, 2명 또는 3명 이상의 노인이 한 가구내에서 동거하는 가구는 군부가 각각 27.2%, 1.2%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지역별 가구당 노인수의 차이는 평균 노인수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군부의 가구당 평균 노인수가 1.3명으로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체 노인가구의 규모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6인가구가 31.6%로

30) Goode는 가족의 생존과 사회적 존속을 획득하기 위해 부양 및 보호능력에 적절한 정도로 출산자녀수를 제한하는 것을 'K-Strategy'라 부르고 있다(Goode, W. J., The Family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82). p. 30 참조).

〈표 4〉 지역별 가구규모

가구규모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
1인가구	9.6	6.9	7.8	12.1
2인가구	19.8	14.8	16.2	24.7
3-4인가구	27.5	26.3	28.1	28.2
5-6인가구	31.6	40.1	34.8	24.3
7인 이상 가구	11.5	11.9	13.1	10.7
계	100.0	100.0	100.0	100.0
(가구)	(15,632)	(5,334)	(2,828)	(7,470)
평균(명)	4.0	4.3	4.3	3.7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3-4인가구 27.5%, 2인가구 19.8%, 7인 이상 가구 11.5%, 1인가구 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합범위별 가구형태에서 '노인+아들부부+손자녀'로 구성된 3대 직체가구의 비율이 높았던 점과 관련성을 지니며,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규모에서 3-4인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가구형태에서 핵가족형 가구의 비율이 높았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sup>31)</sup>

그러나 가구구성원의 수에서는 노인가구에서 다인수가구(多人數家口)의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평균 가구원 수에서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평균 가구원수가 4.2명으로 노인가구의 4.0명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해볼 때 노인가구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인수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지만, 1인가구 즉 독신가구와 2인가구 특히 부부가구를 형성하는 경향 또한 전체가구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노인가구에서는 전통적인 다인수가구인 3대직체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게 잔존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독신가구 또는 부부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점차로 증가하여 노인가구의 보편적 형태로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가구규모를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5-6인가구, 3-4인가구, 2인가구의 순으로 높은 구성비율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군부에서는 3-4인가구, 2인가구, 5-6인가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가구원수에 있어서도 대도

31) 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규모는 3-4인가구가 41.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6인가구 31.9%, 2인가구 12.3%, 7인 이상 가구 7.2%, 1인가구 5.9%의 순으로 나타났다(경제기획원, *op. cit.*, 1985, p. 489 참조).

시와 중소도시가 각각 4.3명인데 반해 군부는 3.7명으로 나타나 군부의 노인가구가 소인수가구(少人數家口)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5인가구를 기준으로 그 미만을 소인수가구, 그 이상을 다인수가구로 분류하여 그 구성비율을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대도시의 경우 소인수가구와 다인수가구의 비율이 48%, 52%이며, 중소도시는 52%, 48%인 반면 군부는 65%, 35%로, 시부의 경우 노인가구의 절반정도가 소인수가구인데 비해 군부는 2/3 정도가 소인수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구의 경우 군부에서의 소가구화(小家口化)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 V. 결 론

###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노인가구형태의 분류방법을 모색하고, 노인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파악함과 아울러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는 22.6%이며, 지역별로는 군부가 36.6%로 그 구성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17.7%, 대도시 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족관계상의 결합형태에 따라서는 직계형 노인가구가 전체 노인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핵가족형 노인가구가 1/3정도의 수준에 이르러 이 2가지 가구형태가 노인가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 외에 독신노인가구가 약 10%, 기타친족 노인가구가 약 5%이며, 비혈연 노인가구는 1%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지역별로도 직계형 노인가구와 핵가족형 노인가구의 구성비율이 높긴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기타친족 노인가구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해볼 때,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경우 가족성원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 가족의 속성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가구구조상의 변화도 본 연구의 결과에 함축되어 있는데, 대도시에서의 딸동거가구의 증가와 군부에서의 직계형 노인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는 노인부양 의식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젊은층 자녀의 이혼향도 현상과 노인의 농촌잔류 현상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노인가구의 세대구성은 3세대가 전체 노인가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세대가 25% 정도이며, 1세대 13%정도 등의 순으로 높은 구성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도 이와 같은 세대구성상의 구성비율은 크게 변함이 없으나, 대도시에서는 3세대와 2세대 가구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군부에서는 1세대와 독신노인만으로 구성된 기타세대의 구성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해볼 때, 노인가구의 경우 긴 가족력을 갖고 있는 관계로 다세대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 일반적인 경향과 노인기에 이르러 신체기능의 약화, 경제적 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해 의존성이 증가함으로써 자녀와 동거하며 보호·부양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노년기 특유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가구의 규모는 5-6인가구가 32% 정도로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3-4인가구, 2인가구, 7인 이상가구, 1인가구의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규모가 3-4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는 5-6인 가구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군부에서는 1인가구와 2인가구의 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노인가구의 경우 전통적인 다인수가구인 3대 직계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독신 또는 부부만으로 구성된 소인수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점차로 증가하여 노인가구의 보편적 형태로 등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정책적 제언

사회경제적 발전과 평균수명의 증가, 노년인구층의 급격한 증대 등으로 연장된 노년기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노년인구층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확산됨에 따라, 보다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는 점차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년기를 경제·사회·신체적 요인 등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충족에 있어서 자신 이외의 가족·사회에의 의존성이 증대해 가는 시기이며, 이러한 노인의 의존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원조체계의 기능이 약할수록 노년기에 있어서의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볼 수 있다.

노후의 의존필요성을 일반적으로 경제적·신체적·정서적인 측면으로 나누고, 이러한 의존성에 대한 해소·완화의 주체를 노인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넓은 의미에서의 노인복지는 노인의 의존필요성과 그 담당주체간의 역할분담이 주어진 조건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

어질 때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의존성이 어떤 양상을 보이며 또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과 이러한 양상과 그 변화에 따라 담당 주체들간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때 가족의 역할과 그 구조·기능상의 변화는 이 과정에서의 주요한 변수로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가족은 사회복지제도로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며, 둘째로 노인 자신과 사회복지제도가 충분한 대처능력을 가지기 전까지는 거의 유일한 원조체계일 수 밖에 없고, 셋째로는 노인복지정책이 가족의 기능강화와 노인의 가족내 통합을 목표로 하는 가족정책적 기반위에서 포괄적이고 일관성있게 시행되는 것이 노인문제의 기본적인 해결방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그 변화를 정책수립에 있어서의 기본요소로 보아서 전개해 나가야 하며,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변화추이와 각 연령층의 복지수요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적응력있는 가족정책으로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